

의안번호	제772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4,828명 → 4,832명(+4)
 - ▶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(+4)
 - ※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3)
 - 총 계: 4,828명 → 4,832명(+4)
 - 일반직: 1,698명→1,699명(+1) ▶ 5급 이하(+1)
 - 연구직: 197명→195명(△2) ▶ 연구관(+1), 연구사(△3)
 - 지도직: 30명→31명(+1) ▶ 지도사(+1)
 - 소방직: 2,845명(변동없음) ▶ 소방정(+1), 소방령이하(△1)
 - 경찰직: 4명(+4) ▶ 경감(+4)

3. 의안전문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6. 비용추계서: 붙임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,828명”을 “4,83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:
4명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828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4,832명</u>----- 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: 4명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4,832	-					
정무직 계	3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일반직 계	1,699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81	56	8	4	7	5	1
5급이하 소계	1,585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별정직 계	12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-					
연구직 계	195	-					
연구관	32			32			
연구사	163	-					
지도직 계	31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5	-					
소방직 계	2,845	-					
소방정	19	6		13			
소방령이하	2,826	-					
경찰직 계	4	-					
경감	4	4					
교육공무원 계	43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】

제2조(정원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4조제2항제5호, 제4조의2제2항제3호, 제8조의2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개요

- 각종 재해재난 시 상황실의 지휘 조정 기능 및 소방·경찰 공동 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

2. 비용 발생 요인 : 정원 총계 증가(4,828명→4,832명, +4)

3. 관련조문(안)

-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
 - 4,828명→4,832명(+4) ▶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(+4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6항
- 추계의 전제 :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(경감) 4명 증가
- 추계의 결과 : 2024년 경찰청 경감 평균 인건비

(단위: 천원)

구분	봉급	명절휴가	연가보상	정근수당	정액급식	직급보조	합계
경감 (1인기준)	54,685	5,624	665	4,686	1,680	2,220	69,560

※ 인건비 산출 : 경감 1명 평균 연봉(69,560천원) × 4명 = 278,240천원
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 (지방교부세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('23→'24년) 인건비 상승률 2.5% 반영 추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합계
경감 (4명)	278,240	285,196	292,326	299,634	307,125	1,462,521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김원묵